

제 498 호

1975. 4.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 조	례	
제 948 호	서울특별시아동일시보호위탁운영에관한조례	3
◎ 규	칙	
제 1463호	서울특별시입시지의사규정증개정규정	4
◎ 고	시	
제 58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	5
◎ 공	고	
제 96 호	영동추가지구(1공구)환지계획공람공고	4
◎ 사	령	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동일시보호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948 호

서울특별시아동일시보호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고아, 기아, 미아, 부랑아 기타 보호를 요하는 아동 ( 이하 " 요보호아동 " 이라 한다 ) 의 일시보호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일시보호의 위탁 ) ① 요보호아동의 일시보호업무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 한다 ) 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② 전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구조 및 설비가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명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 ( 위탁기간 설정등 ) 위탁업무기간과 요보호아동수용정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 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선도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 정한 설비 및 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보호아동의 입소시 건강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요보호아동의 입퇴소는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대역제산을 일시보호사업에 직접 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 8 조의 준용법규 및 동법규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조 ( 지원 ) 시장은 요보호아동을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지급 및 공유제산을 대역할 수 있다.

제 6 조 ( 감독 ) 시장은 수탁자의 일시보호업무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시 수탁자는 관계서류의 제시등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검사결과 수탁자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요보호 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63호

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중개정

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서울특별시 산하병원"을 서울특별시본청, 산하병원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청결핵관리외사는 결핵과 또는 내과전문과목 표방허가물, 가족계획관리외사는 예방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과목 표방허가물 받은 자로 보하며 보건소 결핵외사는 결핵과 또는 내과전문과목 표방허가물 받은 자로 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제 1 항 본문다음에 "다만, 본청결핵 및 가족계획관리외사와 보건소 결핵외사로서 전문과목표방허가물 받은자는 시립병원 과장급에 준하여, 이동치과외사는 시립병원 과장 3 호봉에 준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 11 조 제 2 항 중 "승급은 매년" 다음에 "6월 30일과"를 삽입한다.

별표 1 제 1 항 본봉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턴과 레지던트의 보수에 관하여는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임시지 의사보수 지급 기준표

본 봉 지 급 기 준

지급 구분	인 원	해 지 면 보 평 의 사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1호	2호	3호
월지금액	56,000	64,000	68,000	70,000	72,000	121,000	131,000	141,000

지급 구분	평 의 사		과 장				
	4호	5호	1호	2호	3호	4호	5호
월지금액	151,000	161,000	165,000	175,000	185,000	195,000	205,00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8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 제 122호(74.8.16)로 지적고시 한바있는 상업지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4. 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 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지 (㎡)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중구외계로 일부지역	6,271,600	11,000	6,282,600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6 호

영동추가지구(1공구) 환지  
계획공람공고

1. 당사가 실시하고 있는 영동추가 지구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였기 동법제 47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에 공하고 있음을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지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에 대한 통보문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 미 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서 갈음하오니 다음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환지교부 면적은 개발촉진 지구 실시까지 개발에 부합되도록

최소환지교부 면적은 50 명으로 하고(건물 현황이 유할시 제외) 종전토지는 면적 20 명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토록 하였으며,

나. 종전토지 면적이 20 명이상 50 명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의 위치를 감안 두지번의 소유토지를 인접지에(54 명)을 나란히 환지교부하여 연립주택건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975. 4. 28

서울특별시장

**사 명**

◎ 1975. 4. 26

- 농 정 과 지방수의사 문 현 철
-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물 명함
- 종로구보건소 지방수의사 김 용 철
-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물 명함
-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안 경 환
-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물 명함.

가속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전영환	도시행정과장	서기관	이상억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물 명함		운수 1과장에 포함		
가속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이성호	순찰담당관	서기관	김구현
농정과	근무물 명함		운수 2과장에 포함		
농정과	지방수의사보	유갑용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남상수
관악구보건소	근무물 명함		표학과장		
영등포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나정태	순찰담당관	직무대리에 포함	
농정과	근무물 명함		공무원교육원		
관악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박홍락	교수부장공인	지방서기관	서승백
가속위생시험소	근무물 명함		과장직무대리		
서대문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김형정	조경과장	직무대리에 포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물 명함		도로보수과장	토목기정	성옥호
◎ 1975. 4. 28			도로시설과장에 포함		
인사과장	서기관	박순철	계량 2과장	토목기정	신문수
세정과장에 포함			도로보수과장에 포함		
지하철본부	지방서기관	이홍순	죽도수원지	지방토목기정	이후철
경리과장			사무소장		
인사과장	직무대리에 포함		계량 2과장	직무대리에 포함	
통계담당관	서기관	박승대	◎ 1975. 5. 1		
지하철본부	경리과장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김명현
보함			용군		
운수 1과장	서기관	연기호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도시행정과장	직무대리에 포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물 명함.	

8-8

제 498호

시

보

1975. 1. 28

<p>중정복도기회 관리실기회 담당관실</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 안재경</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	------------------------	--

서울특별시장